

하수도 통계

- 통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7조, 제25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**지정통계**(2016.5)
 -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(161개 공공하수도관리청)
 - 지역발전을 위한 **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**가 되는 통계
 -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
 -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
 -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
- ✓ **지정통계로 통계법상 법적 조치 가능**
- 기초지방자치단체(하수도사업자)의 담당자에 의한 **보고통계**
- 작성주기: **1년**마다 발행

통계법

부실·부정 작성에 대한 관련 법규(통계법)

제25조(자료제출명령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.

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**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**

제32조(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)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**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.**

제41조(과태료)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**과태료를 부과한다.**

2.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3.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